

난항 겪는 유기농산물 표시규격 기준설정

Codex 위원회 국제규격 결정보류
WTO협정 때문에 각국서 신중론 퍼

코덱스(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내년으로 예정해온 유기농산물 표시의 국제규격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 규격의 초안에는 「有機」 표시를 하려면 정부의 검사제도에 의한 인증(認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日本등에서는 「국내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명해 왔던것. WTO(세계무역기구)협정은 각국이 농산물 규격을 만들 경우에 국제규격을 채택하도록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각국에서는 신중론(慎重論)을 내세우고 있다. 이 협정은 무역 뿐만아니라 규격, 기준 등 농업분야에 폭넓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有機」 등의 표시와 관련, 국제적 「룰」 을 검토하고 있는 코덱스위원회는 당초 규년에 이 위원회 식품표시부회에서 규격안을 정하고 내년여름 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24일부터 5일간 캐나다에서 개최된 식품표시부회에서는 유기농산물 표시의 국제규격초안에 대해 日本을 비롯, 각국에서 신중론이 나와 규격안을 결정할 수 없었다. 현재 부회는 1년반마다, 총회는 2년마다 개최하므로 규격안이 결정되려면 빨라도 96년, 총회에서의 채택은 97년 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有機·生物的 식품의 생산·가공·표시 및 마케팅을 위한 가이드라인案」 이란 명칭으로 유럽연합(EU)의 규격을 기초로 호주에서 작성했다. 「有機」로 표시하려면 정부기관과 정부가 인가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강제규격」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과 호주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조기결정을 얻어내려 애쓰고 있는 가운데 신중론이 대두된 것은

WTO협정이 배경. 국제식품규격의 채택은 이후 각국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WTO협정의 「무역의 기술적 장해에 관한 협정」에서는 각국이 농산물과 공산품의 규격을 만들때는 국제규격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협정이 발효되려면 「有機」 표시의 규격도 국제규격에 맞지 않으면 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유기농산물등 특별표시 가이드라인」은 국가의 검사제도가 아니다. 앞으로 유기농산물이 「특정 JAS(일본농림규격)」의 대상이 되려면 검사제도는 정비되어야겠지만, JAS는 「임의규격」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않아도 「有機」 표시는 가능하다. 農水省에서는 「초안을 日本의 법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有機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일본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중앙정보**

유기농산물 표시의 국제규격초안과 일본의 가이드라인

		국제규격초안	일본 가이드라인
검사·인증		국가 검사제도에 의한 인증의무화 (인증받지 않으면 「有機」 표시 금지)	국가 검사제도 필요없음(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아도 「有機」 표시 가능)
대상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농산물
주요생산방법	농산물	재배전에 최저 2년간 무농약·무화학비료	수확전 최저 3년간은 무농약·무화학비료
	축산물	유기재배사료에 최저 1년간 사육	-
	가공품	유기농산물을 95%이상 사용	-